₩ 대주제: 경북대학교 복학·재입학·자퇴·제적 제도

♦ 소주제: 복학 제도

내용:

- 신청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→ [휴·복학 신청] 메뉴에서 직접 신청
 -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
 - 업로드 불가 시 학과(부) 사무실에 직접 제출

복학 유형 신청기한 휴학 종료 후 다음 학기 개강 전 일반 복학 없음

군제대 복학 휴학 종료 후 다음 학기 개강 전

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 귀향조치 복학 귀향 즉시 귀향증 (복학 또는 일반휴학 필요)

유의사항:

• 군복학은 전역 후 1년(2개 학기) 이내 복학 필수

• 예1: 2019년 11월 제대 →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필수

• 예2: 2020년 3월 제대 →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필수

학기 구분:

• 1학기: 3월 1일 ~ 8월 31일

• 2학기: 9월 1일 ~ 다음 해 2월 말일

♦ 소주제: 재입학 제도

내용:

신청 대상:퇴학 또는 제적된 자

• 단, 유급제적·학사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필요

신청 시기:

• 1차: 12월~1월

• 2차: 6월~7월

• 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선발

제한 사항:

- 징계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
- 단.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에 따라 구제 가능한 경우 예외
- 이전에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경우, 재입학 후 일반휴학 불가

♦ 소주제: 자틴 제도

내용:

- 신청 시기:본인이 자퇴를 희망할 때
- 신청 방법:통합정보시스템 → [자퇴 신청] 메뉴
 - 자퇴원 출력 후 학과 사무실 제출 (대학원은 학사과로 제출)

제출 서류:

- 자퇴원 1부
- 통장사본 1부 (등록금 환불 대상자)

양식 구분:

• 학부용 / 일반대학원용 / 전문·특수대학원용 자퇴원

♦ 소주제: 제적 제도

내용:
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됨:

- 1.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
- 2. 휴학 허가 없이 등록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자

- 3.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
- 4. 학사경고 연속 3회 받은 자
- 5. 재학연한 초과 후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6. 의학·치의학·수의학과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유급 3회 해당자
- 7. 사망자